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18 선고 2022가단1056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박종대

변론 종결2024. 9. 27.

판결 선고2024. 10. 18.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20. 1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기와 2020. 11. 13. 접수 제1601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20. 11.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C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1) 2020. 11. 25. 접수 제31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22.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C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2. 12. 30. 접수 제338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가. 이 사건 환수결정 관련 경위

1) 원고는 2020. 9. 25. 약사인 C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C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I약국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총 2,035,908,670원(현금고지금액)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20. 10. 하순경 이 사건 환수결정을 당시 C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당진시 D건물, E호'로 발송하였다. 2020. 10. 29. 위 장소에서 이 사건 환수결정에 관한 문서를 수령한 사람은 F이다.

3)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환수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C는 2023. 12. 5. 수원고등법원에서, '약사가 아닌 G, H와 공모하여 G, H로 하여금 2006. 1. 10. 무렵부터 2015. 3. 4. 무렵까지 I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위 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2006. 2. 21.부터 2015. 2. 26.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 명목 등으로 3,171,270,11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약사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2023노83).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3. 12. C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 명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 1) C는 배우자인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0. 11. 13. 접수 제160168호로 2020. 11.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2) C는 손자녀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0. 11. 25. 접수 제31422호로 2020. 11.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3) C는 손자녀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2. 12. 30. 접수 제33888호로 2020.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결정에 기초한 부당이득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는 이러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존재를 명백하게 알면서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들과 이 사건 제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3.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1)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 등 참조).
- 2)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3)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등 참조).

4)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등 참조).

5)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환수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결정에 기초한 부당이득 징수권을 보유한다. 그 액수에 관해서는,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 원금이 2,035,908,670원이고, 연체금이 183,012,300원인 사실, C가 6,500,000원을, G가 17,850,000원을, H가 95,450,000원을 각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연체금 발생 내지 변제 총당 내역이 불분명하나, 이러한 부분은 이 사건의 결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추가로 논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우선, 2020. 10. 29.에 '당진시 D건물, E호'에서 이 사건 환수결정에 관한 문서를 수령한 F는 C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C는 이 사건 환수결정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환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피보전채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0. 10. 29.에 당시 C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위 장소에서 이 사건 환수결정에 관한 문서를 수령한 사람이 F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와 F의 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 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은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원 등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C가 이 사건 환수결정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20. 9. 9. 이 사건 환수결정 전 절차로서 C에 대한 환수예정통보(사전통지)를 하면서 이 역시 당시 C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당진시 D건물, E호'로 발송한 사실, ② 2020. 9. 14.에 위 장소에서 위 환수예정통보에 관한 문서를 수령한 사람은 J인데, J 역시 C의 관계가 불분명한 사실, ③ C는 직후 원고에게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한 다음 환수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수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은 또한, ① C가 G, H로 하여금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에 관하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전에 기하여 약사가 조제, 판매한 약값 중 본인 부담금 등까지 포함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담이득 징수를 하는 것은 위헌적인 등 부당하고, ② 이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는 편취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사기죄를 인정하는 판례는 변경되어야 하며, ③ 해당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2,035,908,670원 전액을 징수하는 취지인 이 사건 환수결정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감경을 전혀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은 그것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수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C가 2020. 10. 29.로부터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환수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이제는 누구도 이 사건 환수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당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피보전채권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유 없다.

4.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1 부동산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가. C의 재산 상태

1) 갑 제8, 9, 11 내지 13, 16, 18 내지 2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K,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11. 12. 기준 C 명의로 된 재산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7 부동산(단,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2 지분만이 아닌 전체 지분)이 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와 L은행에 대한 담보대출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중 L은행에 대한 담보대출채무에 관한 담보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전체 지분)인바, L은행에 대한 담보대출채무는 이를 따로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전체 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한다(이하 같다).

1	이 사건 제1 부동산(전체 지분)	424,998,000원(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L은행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공제)
2	이 사건 제2 부동산	10,710,000원(개별공시지가 기준)
3	이 사건 제3 부동산	6,011,400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4	이 사건 제4 부동산	38,575,550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이 사건 제5 부동산	6,938,400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6	이 사건 제6 부동산	22,681,600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7	이 사건 제7 부동산	10,917,367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원 단위 미만 반올림, 이하 같음)
합계	520,832,317원	

1	원고에 대한 채무	최소 1,916,108,670원[최초 원금은 2,035,908,670원인데, C의 변제액 6,500,000원과 G 변제액 17,850,000원과 H의 변제액 95,450,000원이 모두 원금에 충당(실제로는 위 변제액은 대체로 기준일 이후에 변제된 것임)되었고 2020. 11. 12.까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함(피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가정함), 이하 같음]
---	-----------	--

2) 한편 C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제2 내지 7 부동산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가치를 대변하는 지표라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위 적극재산 가액 합계는 520,832,317원이고 그중 이 사건 제2 내지 7 부동산의 가액은 95,834,317원임에 반하여 위 소극재산 가액은 최소 1,916,108,670원으로서 적극재산 가액과 소극재산 가액의 차이는 최소 1,395,276,353원에 이른다. 설령 이 사건 제2 내지 7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15배인 1,437,514,750원 이상에 이른다고 가정하더라도, C가 피고 A에게 그 가액이 212,499,000원(= 424,998,000원 × 1/2)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이 그만큼 줄어들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 아무리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실제 가치를 대변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15배 이상 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C는 2020. 11. 12. 당시 내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같은 기준으로 본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 증여계약의 체결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게는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1964. 3. 12. C와 혼인하여 60년 이상을 살았지만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는바, C는 피고 A에게 재산분할의 의미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동소유하게 한 것으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A와 C는 이혼한 것이 아니므로 위 증여계약을 재산분할로 평가하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따질 수 없다. 나아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데(위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피고 A의 주장은 단순히 C에게 협력을 하였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이지 C 명의로 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며,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피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A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피고 A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C 사이에 2020. 11. 12.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가. C의 재산 상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20. 11. 25. 기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7 부동산(단,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와 L은행에 대한 담보대출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C는 2020. 11. 25.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1	이 사건 제1 부동산(남은 지분)	212,499,000원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L은행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중 1/2 공제)
2	이 사건 제2 부동산	10,710,000원(개별공시지가 기준)
3	이 사건 제3 부동산	6,011,400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4	이 사건 제4 부동산	38,575,550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이 사건 제5 부동산	6,938,400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6	이 사건 제6 부동산	22,681,600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7	이 사건 제7 부동산	10,917,367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합계	308,333,317원	

1	원고에 대한 채무	최소 1,916,108,670원
---	-----------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 1) C는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와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게는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은 모두 M 내지 그 하위 종중 소유로서 C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C의 재산이 아닌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3)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 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등 참조).

4)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① 제사 및 시제 전답표(을 제3호증의 2)에는,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이 C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종중의 소유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제4 부동산 C, 이 사건 제2 부동산 철도하 N(O), 이 사건 제3 부동산 철도상 N(O), 이 사건 제6 부동산 O, 이 사건 제5 부동산 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2) N은 C의 아버지이고, O는 C의 할아버지인 점, ② 이 사건 제2, 3, 5, 6 부동산은 기존에 O가 소유하였다가 2018. 11. 경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O으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상속인이 한 명은 아닌 것은 분명한 점, ③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C 조상의 묘가 상당수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로 알 수 있는 반대 사정, 즉, ① 피고 B가 주장하는 종중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바, 피고 B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나는 종중은 P종회, Q종회, R종회, S종중으로 일관되지 않으며, 이중 어떤 종중도 어떤 시점에서든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충북 음성군 T 전 1,974㎡에 관하여는 S종중이 1981. 8.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U 임야 7,041㎡에 관해서는 R종회가 1994.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 또는 이 사건 제7 부동산 인근의 다른 부동산에 관해서는 M 하위 종중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일이 있는 한편,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종중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위치한 묘가 누구(의 조상)의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④ 제사 및 시제 확인서(을 제3호증의 2, 3)의 작성 시기가 불분명하고, 위 문서들과 확인서(을 제3호증의 4),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만 가지고 토지 소유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 내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은 모두 M 내지 그 하위 종중 소유로서 C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C 사이에 2020. 11.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7 부동산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가. C의 재산 상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22. 12. 30. 기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 7 부동산(단,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와 L은행에 대한 담보대출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C는 2022. 12. 30.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이 사건 제1 부동산(남은 지분)	228,356,500원 (2024. 8.경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L은행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중 1/2 공제)
2	이 사건 제7 부동산	12,331,533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합계	240,688,033원	

1	원고에 대한 채무	최소 1,916,108,670원
---	-----------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C는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과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게는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제7 부동산은 M 내지 그 하위 종중 소유로서 C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C의 재산이 아닌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제5의 나.항 4)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더욱이 이 사건 제7 부동산은 제시 및 시제 전답표(을 제3호증의 2, 3)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C 사이에 2022. 12. 30. 체결된 증여계약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현준

별지

1) 청구취지의 '청주지방법원 등기과'는 옳기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도 있다.